

[붙임1]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후 (안)	개정 이유
제 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 21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목 개정 2026.03.25) ① 좌동 ②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03.25)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및 문구정비(상법 제364조,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 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좌동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5)	*상법 개정에 따라 대리권 증명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상법 제368조 제2항)
제 30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2023.03.23)	제 30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② 좌동	* 사외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에 따른 개정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5)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5)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6.03.25)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항 이동 2026.03.25)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항 이동 2026.03.25)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개정 내용 반영 (상법 제382조의3)
제 36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상법 제399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 36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상법 제399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3.25) ② 생략	* 사외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상법 제 542조의 8)
제 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3.03.23)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개정 2026.03.25) ⑧ 생략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3.03.23)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6.3.25)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④ 생략 ⑤ 생략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6.03.25)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개정 2026.03.25) ⑧ 생략 ⑨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상법 제 542조의 8)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에 따라 문구 수정(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감사위원의 선·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개정 (상법 제 542조의12 제4항) * 사외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상법 제 542조의 8)

현행	개정 후 (안)	개정 이유
<p>제 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생략</p> <p>② 이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3.03.23)</p>	<p>제 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생략</p> <p>② 이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고, <u>독립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u>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3.03.23, 2026.03.25)</p>	<p>*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 개정</p>
<p>부 칙</p> <p>생략</p> <p>신설(2026.03.25)</p>	<p>부 칙</p> <p>생략</p> <p>22.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다만</p> <p>①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6조의2,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3조의22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p> <p>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